

수원고등법원 2022. 9. 30 선고 2022나1486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(선정당사자), 피항소인

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준용

피고, 항소인 B

변 론 종 결 2022. 9. 2.

판 결 선 고 2022. 9. 30.

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2. 3. 16. 선고 2021가합11687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가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2.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. 6. 10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
나. 피고는 원고(선정당사자, 이하 ‘원고’라 한다) A에게 62,079,044원, 선정자 D에게 51,659,048원, 선정자 E에게 85,727,670원, 선정자 F에게 58,313,807원, 선정자 G에게

61,850,9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1)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출된 증거들을 당사자들의 각 주장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유현종, 판사 김무신, 판사 심연수

별지1

선 정 자 명 단

- 1. A
- 2. D
- 3. E
- 4. F
- 5. G

끝.

별지2

부동산의 표시

1. 경기 양평군 R 전 331㎡
2. 경기 양평군 S 전 92㎡ 중 1/2 지분(피고 소유)
3. 경기 양평군 T 전 983㎡ 중 1/2 지분(피고 소유)
4. 경기 양평군 U 전 458㎡ 중 1/2 지분(피고 소유). 끝.

1) 원고가 제출한 청구취지에는 ‘다 갚는 날까지’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단순히 착오로 누락된 것으로 보이므로,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행하여 판단한다.